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11. 17.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이진환 의원 등 5명(이선주, 정창근, 김장관, 박왕규)
- 발의일자: 2023. 11. 3.(금)
- 회부일자: 2023. 11. 3.(금)
- 상정 및 의결: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1. 17.)

### 2. 개정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화함으로써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를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

###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재계약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민간위탁 중도해지 사유발생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에서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 우리구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이나 수탁자 선정 등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되며, 수탁기관의 업무추진이 구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사무의 구의회의 일정한 통제는 필요한 상황으로,
- 재위탁 및 재계약에 따른 임의적인 내용 변경이 방지됨으로써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음.

##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 **7. 심사결과: 수정가결**